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최경천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1일

## 3.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지원체계 구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동 인식 개선 홍보 등

다.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강근)

### 가. 제출배경

- 2017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종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향후 3년 이내의 진로 계획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이 42.3%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두 번째로 34.9%였으며,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은 학교 진학 희망이 82.1%, 19~24세는

< 향후 진로 계획 > (단위 : %)

구분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기업	이직	현 직장 유지	미결정	기타
연도별	2011년	52.9	28.6	2.5	0.0	-	-	11.7
	2014년	57.6	27.6	1.6	0.2	-	-	10.9
	2017년	42.3	34.9	0.7	0.0	3.1	6.7	11.6
연령별	13~18세	82.1	9.6	0.3	-	0.2	0.3	7.2
	19~24세	10.9	54.8	0.9	0.0	5.3	11.6	15.0
성별	남	42.4	35.1	0.7	-	2.5	3.9	14.3
	여	42.1	34.7	0.7	0.1	3.8	9.8	8.5
지역별	대도시	41.7	33.6	0.7	-	3.6	6.5	13.2
	중소도시	43.1	35.7	0.3	0.1	2.9	6.7	10.6
	농산어촌	41.9	36.7	1.4	-	2.3	7.1	9.6

취업이 54.8%로 희망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상급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임.

- 또한, 지난 ' 19.11월 충청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11,78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49.3%(5,804명)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거나 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15.9%(3,181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학생이 54.8%(3,181명),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49.4%(2,869명)로 조사됨.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충청북도 알바인권센터는 청소년 인권강사 양성교육과 알바 인권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센터 명칭부터 대상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고, 업무도 별도 인력이 아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취업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포괄하여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9~24세)을 위해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서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가.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용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도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현재 충청북도 알바인권센터의 대상 연령이 24세 이하인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sup>1)</sup>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에서 청소년 범위를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음.

### <다른 시·도 조례의 청소년 범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청소년의 범위
서울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9세 이상 24세 이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4세 이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4세 이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4세 이하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9세 미만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4세 이하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9세 이상 24세 이하

1)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
  - 특히,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는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시행 2019. 7. 1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교육청과 협의 추진 필요함.
- 안 제4조는 사용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 금지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청소년 노동 인권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자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노동 인권 상담·지원체계 구축·교육·프로그램 개발·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제7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식개선 및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노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한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기존 ‘충청북도 알바인권센터’ 를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로 변경할 것과 전문 상담 인력의 배치를 주문하고 있음.
  - 단, 전문 상담 인력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및 센터와의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 취업과 아르바이트를 희망하고 직접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됨.